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8. 30 선고 2022가단1290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정재완, 김용준, 강소영

변 론 종 결 2023. 6. 28.

판 결 선 고 2023. 8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B 사이에 2019. 9. 10. 체결된 324,816,24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24,816,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B, 그의 배우자 C, 그들 자녀인 피고는 2019. 7. 16. D에게 서울 중랑구 E 다세대주택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총 9개 호실 중 각자 소유하는 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2019. 9. 11.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1호, 1층 F호, 4층 G호, H호, 5층 I호, 6층 J호를 매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0억 1,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.

다. B은 위 양도에 대하여 2020. 6. 12. 원고로부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받았으나,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체납하고 있다.

번호	세목	귀속	납세의무 성립일	납부기한	고지세액(원)	체납액(가산세 포함, 원)
1	양도소득세	2019	2019. 9. 30.	2019. 6. 30.	679,181,160	806,527,440

라. B은 2019. 9. 10.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으로 받은 5억 원 중 1억 원, 1억 1,000만 원, 2,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각기 다른 K조합 계좌로 입금하였다(이하 나열된 금액 순서대로 ‘1차, 2차, 3차 입금’이라 한다).

마. B은 위 라. 항 기재 5억 원 중 134,816,240원으로 피고의 K조합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다(이하 위 라.항과 더불어 ‘이 사건 처분행위’라 한다).

바. 원고는 2022. 4. 13. B의 이 사건 처분행위를 알게 되어 2022. 7. 21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3, 6, 15, 을 5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본인 소유인 L호를 매도하며 매매대금 2억 1,0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 1억 7,000만 원을 공제한 4,000만 원만을 수령했어야 하나,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라 총 364,816,240원(1억 원 + 1억 1,000만 원 + 2,000만 원 + 134,816,240원)을 수령하였다. 결국 피고는 B으로부터 그 수령액에서 4,000만 원을 공제한 324,816,24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. 이러한 B의 증여행위는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B이 부동산 양도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,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.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9. 6. 12. 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,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(1) 우선 앞서 본 것처럼,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였던 L호의 매매대금은 2억 1,000만 원, 임대차보증금은 1억 7,000만 원이며, B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5억 원 중 2억 3,000만 원(1~3차 입금액 합계)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, 134,816,240원은 피고의 K조합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.

(2) 그러나 을 3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주장하는 B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사실만으로는 B이 위 금전을 피고에게 중국적으로 귀속되게 하겠다는 의사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(이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). 즉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

대상이 되는 증여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실패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① 피고는 1차 입금액 1억 원 중 8,000만 원을 2019. 9. 25. C에게 입금하고 같은 날 다시 B으로부터 4,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, 1차 입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6,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(B와 C는 경제공동체로서 생활을 같이하는 부부이므로 C에게 주거나 받은 금전은 B에게 주거나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). 2차 입금된 1억 1,000만 원은 2019. 9. 25. B에게 그대로 전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없다고 볼 수 있다. 3차 입금된 2,000만 원 관련하여 피고는 2019. 9. 24. B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, 피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1,500만 원에 불과하다. 결국 피고는 1~3차 입금액 2억 3,000만 원 중 7,700만 원만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.

② 피고는 K조합으로부터 2014. 4. 25. 5,000만 원, 2014. 8. 21. 9,900만 원, 2016. 1. 7.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, 그 중 1억 3,250만 원을 B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. 이는 피고가 B에게 1억 3,25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, B가 2019. 9. 9. 위 K조합 채무의 원리금 합계 134,816,240원을 상환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.

③ 이 사건 부동산 L호는 B가 소유하며 관리하다 2004년 피고에게 1/2 지분만큼 증여한 것인데, L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B와 C가 소유하며 관리해 온 점, 위 L호를 2015년경부터 2년간 임차한 M도 2015. 5. 14. 피고가 아닌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,6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의 주장과 같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나 C가 위 L호의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어서 피고가 B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.

④ 이처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L호의 매매대금 전부인 2억 1,000만 원을 수령할 권원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,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위 7,700만 원에 불과하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판사 임기환